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. 1. 23 선고 2017가단217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망 B의 소송수계인

1. C

2. D

3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. 23.

주 문

1. 원고에게

가. 전북 고창군 F 전 1501㎡ 중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은 3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, E은 각 2/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1. 11. 1. 접수 제135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,

나. 전북 고창군 F 전 1501㎡ 중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은 3/7 지분에 관하여,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D, E은 각 2/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1. 11. 1. 접수 제1354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이유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김동관

별지